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관 의 장



제 850 호 2013. 10. 22(화)

## 규 칙

○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19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] ..... 2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 
공포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윤충호



2013년 10월 22일

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419호

###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민간 전문가”를 “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”로 한다.

다만,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【별표 7의4】

##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(제13조의3 관련)

## 가. 6급 이하 및 기능직

직렬	직류	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	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
독지	산림 자원	기술사 : 조경, 종자, 산림, 농화학 기사 : 산림, 조경, 종자, 임업종묘, 식물보호, 임산가공, 산업기사 : 조경, 종자, 산림, 식물보호, 임산가공 기능사 : 조경, 종자, 산림, 임업종묘, 임산가공	
	산림 보호	기술사 : 종자, 산림, 농화학 기사 : 산림, 위생종묘, 식물보호, 보양환경 산업기사 : 산림, 식물보호, 동물도양평가관리 기능사 : 산림	
	산림 이용	기술사 : 산림 기사 : 산림, 임산가공 산업기사 : 산림, 임산가공 기능사 : 산림, 임산가공	
	조경	기술사 : 조경, 자연환경관리, 산림, 시설원예 기사 : 조경, 자연생태복원, 산림, 시설원예, 식물보호 산업기사 : 조경, 자연생태복원, 산림, 식물보호 기능사 : 조경, 산림	

※ 비 고: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.

## 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### 1. 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(2013.05.06)으로 면접시험 기준을 법령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
- 잣은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민간전문가의 면접위원 위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면접위원에 포함
- 동일직렬 타 직류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녹지직렬 중 조경직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도 “조경기능사” 추가

### 2. 주요내용

- ‘면접시험기준’ 조항 삭제
  - ‘면접시험기준’을 인사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나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
-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위원 위촉관련 제도 개선
- 조경직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자격증에 ‘조경기능사’ 추가
  - 녹지직렬 중 ‘산림자원’, ‘산림보호’, ‘산림이용’직류에는 「기능사 자격증」을 명시하고 있으나, ‘조경’직류에는 기능사 자격증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동일직렬에 타 직류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